

	가정통신문	부서담당: 학생생활지원부 전화번호: TEL: 021) 6493 - 9512 FAX: 021) 6493 - 9600 홈페이지: http://skoschool.com
中國 上海市 閔行區 華漕鎮 聯友路 355號 (郵)201107		

2025학년도 학교생활 및 학교생활규정 안내

항상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학교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, 덕네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.

본교는 초, 중, 고등학생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들의 학교 규정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. 무엇보다도 예방 중심의 생활지도를 강조하고 있으니, 가정에서도 학교의 교칙을 잘 이해하셔서 자녀들이 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.

중등학생 생활교육 규정

[전면 개정 2024.4.12. 중등-학생생활지원부]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, 초·중등교육법 제18조,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와 본교 학칙에 의거하여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인격 존중) ① 학생의 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. <개정 2024.4.12.>
② 학생 징계는 학생의 평소 품행, 동기,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처리하되,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.
- 제3조(공정성·일관성 유지) 학칙 위반 사안에 대하여 징계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공정하고 일관성있게 적용한다.
- 제4조(선도 방법) 선도 방법에는 선도확인서 발부, 징계가 있다.

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

- 제5조(구성 및 의결) ① 학생들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를 둔다.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모든 사안도 위원회에서 진행한다. <개정 2024.4.12.>
② 위원회는 교감, 학생생활지원부장, 학년기획부장(7~11학년인 경우), 각 학년 기획교사(7~11학년인 경우, 단 담당학급의 담임인 경우 해당부서에서 지정한 교사), 진학부장(12학년인 경우), 진학부 생활지도 담당교사(12학년인 경우, 단 담당학급의 담임인 경우 해당부서에서 지정한 교사), 학생생활지원부 사안 담당교사로 구성한다. <개정 2024.4.12.>
③ 교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, 학생생활지원부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.
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모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[전면개정 2021.12.15.]
- 제6조(기능) 위원회는 학생 사안(교내봉사 이상으로 판단되는 사안 또는 한 학년 기준 선도확인서 누계가 4회 이상인 경우)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.
- 제7조(소선도위원회의 구성, 의결) ① 학생 사안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선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제1항에 의한 소선도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생활지원부장이 되고, 학생생활지원부 교사들로 구성한다.
③ 소선도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 소선도위원회는 학교장의 결재 없이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,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

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선도확인서 또는 사안경위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- **제8조(소선도위원회의 기능)** ① 소선도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을 학생 사안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를 결정한다. 단, 징계는 교내봉사 이하 수준으로 줄 수 있다. <개정 2024.4.12.>
② 제1항에서 정한 지도대상 학생에 대한 지도는 전 교원의 협조로 진행한다.
- **제9조(기록 및 사무처리)** ① 위원회 및 소선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(심의결과)은 사안 담당교사가 기록,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. <개정 2024.4.12.>
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은 관련 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 [전면개정 2021.12.15.]

제3장 선도 절차

- **제10조(사안 발생)** 학칙 위반을 인지한 교사가 간단한 조사 등을 통해 위반의 경중을 판단한 후, 가벼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훈계 또는 지도를 하고 무거운 경우에는 선도확인서를 작성(현장 선도 교사 및 위반학생 사인)하여 담임교사 또는 학생생활지원부로 송부한다.
- **제11조(관찰 면담)** 학생생활지원부로 인계된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교감과 학생생활지원부장, 학생생활지원부 사안담당 교사가 논의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한다.
- **제12조** 삭제 <2014.9.8.>
- **제13조** 삭제 <2014.9.8.>
- **제14조(위원회 회부)**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가 결정되면 학생생활지원부 담당자는 위원회의 위원장 및 학교장에게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, 담임교사를 통해 학부모에게 통보한다. <개정 2024.4.12.>
- **제15조(선도 사안 서면보고)** 학생생활지원부 담당자는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. 단, 서면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1. 사안 발생 일시
 2. 사안 발생 장소
 3. 사안 연루자
 4. 사안 내용
 5. 사안 발생 사유
- **제16조(위원회 소집)**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을 결정한다. <개정 2024.4.12.>
- **제17조(2차 심의)** ① 학생생활지원부 담당교사는 사안을 설명하고 위원들과 질의 및 응답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.
② 위원회는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부득이한 경우 의견 진술을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15.>
③ 위원회는 사안설명, 의견청취, 진술 등을 토대로 선도 여부 및 징계 양정을 심의 의결한다. <개정 2021.12.15.>
④ 위원장은 징계(선도)의결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, 학생생활지원부 담당교사는 의결 사항을 정리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다.
⑤ 징계대상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뚜렷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권고 전학 처리한다.
- **제18조(징계의 종류)** 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(반성문), 학부모 소환, 교내봉사, 출석정지, 특별교육이수, 퇴학 중에서 선택하여 징계하며, 세부징계기준은 [별표 1]에 준한다.
② 출석정지 기간은 1회 10일까지, 연간 30일까지 선택하여 징계한다.
③ 출석정지 기간 중, 상해시 민항취 내의 사회봉사기관(양로원, 특수병원, 고아원 등)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, 그 활동 기간만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④ 출석정지 기간 중의 봉사활동 기간은 3일은 1일, 5일은 2일, 7일은 3일, 10일은 4일까지 인정할 수 있다.
⑤ 1일 6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할 때 출석으로 인정한다.
⑥ 출석인정 봉사활동 확인서는 당해 봉사활동 기관의 장(혹은 봉사 담당책임자)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것만 유효하다.
⑦ 출석정지(1회 10일까지)와 교내봉사(1회 10일까지)를 함께 징계할 수 있다.
⑧ 특별교육이수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1회 10일까지 이수한다.
- **제19조(학교장 재심요구 및 결의)** ① 학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15.>
② 학교장의 재심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재소집해야 한다. <개정 2021.12.15.>

- ③ 학교장이 재심요구를 할 때에는 재심요구 사항을 위원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.
- ④ 재심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1.12.15.>
- ⑤ 재심의결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.
- ⑥ 학교장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전체 교무회의를 통한 재심의가 가능하다. 이 경우 의결은 중등 교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□ 제20조(집단폭행 또는 성관련 사건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) 삭제 <개정 2024.4.12.>

□ 제21조(집단폭행 또는 성관련 사건의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) 삭제 <개정 2024.4.12.>

□ 제22조(공고) 삭제

□ 제23조(통보) ①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통보한다.

1. 학생과 학부모에게 징계개시 1일 전까지 징계 의결 내용을 통보한다.
2. 징계내용, 징계기간 중 준수사항, 지도 프로그램, 학부모 협조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학생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전달하고, 학생생활지원부 교사 또는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학부모에게 통보한다. <개정 2024.4.12.>

제4장 해 제

□ 제24조(징계해제) ①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내려졌던 징계 및 조치가 끝나는 대로 각서를 제출하여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② 뚜렷한 이유 없이 각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권고전학 처리한다.

□ 부 칙 <2024.04.12.>

본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세부징계기준(제18조제1항관련) <개정 2017.01.13., 2017.09.13., 2021.12.15., 2024.04.12.>

분류	세 부 내 용	징계의 구분					
		반성문	교내봉사	출석정지		퇴학	비고
				출석정지	교내봉사		
수업	1.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	○	○	○	○		
	2.교사에게 불손한 언행(욕설 및 폭언, 폭행 등)을 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3.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	○	○				
	4.수업을 거부한 학생	○	○				
	5.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6.백지동맹을 주도했거나 선동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7.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8.수업 중 음향기기를 청취한 학생(2회 이상 발견)	○					
	9.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생(2회 이상 발견)	○					
준법 · 공중 도덕	10.교내·외 폭행 학생	○	○	○	○		
	11.교내·외 집단폭행 주동 및 가담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12.따돌림(집단적 따돌림 포함) 주동 및 가담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13.괴롭힘 주동 및 가담 학생	○	○	○	○		
	14.교내·외 금품 및 물품 절취 학생(1차) - 출석정지/퇴학/학부모 각서	○	○	○			
	15.교내·외 금품 및 물품 절취 학생(중·고 통합 2차) - 권고전학 및 퇴학					○	
	16.교내·외 협박, 감금, 금품 및 물품 갈취 학생,	○	○	○	○	○	
	17.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빌려서 안 가져오는 경우	○	○	○	○	○	
	18.타인에게 강제로 아르바이트를 시켜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	○	○	○	○	○	
	19.휴가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20.부당하게 금품을 각출한 학생	○	○	○	○		
	21.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	○	○	○	○	○	
	22.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하여 사실상·감정상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	○	○	○	○	○	
	23.품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	○	○	○			
	24.학생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학생	○	○	○	○		
	25.공안국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26.공안국에 구속, 석방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
	27.인장 또는 제증명(사인)을 위조 또는 고의로 파기한 학생	○					
	28.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			○	○	○	
	29.불건전한 문서를 은닉, 탐독, 제작,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30.형법상의 유죄로 판결된 학생			○	○	○	
	31.학생을 선동하여 교칙을 문란케 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32.교내 시설을 고의로 파손 및 훼손한 학생	○	○	○	○		
	33.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34.도박을 한 학생	○	○	○	○		
	35.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	○	○	○			
	36.불온한 물건, 불량서적을 소지하거나 탐독한 학생	○	○				
	37.성희롱(성적 수치.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한 경우), 성추행, 성폭행을 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38.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	○	○	○	○		
준법·종교·노동	39.타인에게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여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경우	○	○	○	○		
	40.(전동)오토바이 운전 및 폭주하는 학생, (전동)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낸 학생	○	○	○	○		
용의복장	41.의사와 관계없이 호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그 학생을 따라다니는데, 그런 행동과 관련하여 그 사람에게 정신적·신체적 피해를 주는 학생(스토킹)	○	○	○	○	○	
	42.용의복장 규정에 어긋나는 복장을 한 학생	○	○	○	○		
통학	43.통학버스 이용시 부모 및 기사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(1차) - 반성문/학부모 소환 및 각서	○					
	44.통학버스 이용시 부모 및 기사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(중/고 통합 2차) -학부모 소환 및 각서/1주일 통학버스 탑승 제한	○					
	45.통학버스 이용시 부모 및 기사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(중/고 통합3차) -학부모 소환 및 각서/1개월 통학버스 탑승 제한	○					
	46.통학버스 이용시 부모 및 기사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(중/고 통합4차) - 통학버스 탑승 제한(전출 및 졸업까지)	○					
근태	47.미인정 결석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48.무단외출 및 월당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49.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	○	○	○	○	○	
흡연·음주·약물·영양	50.흡연(흡연용품을 소지한 학생 포함)으로 1차 적발된 학생-반성문/학부모 소환 및 각서	○	○	○			
	51.흡연(흡연용품을 소지한 학생 포함)으로 2차(중등과 고등 분리하여 합산) 적발된 학생 - 출석정지			○	○		
	52.흡연(흡연용품을 소지한 학생 포함)으로 3차(중등과 고등 분리하여 합산) 이상 적발된 학생 - 출석정지/학부모각서				○	○	
	53.음주한 학생 및 주류 소지, 주정을 출입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54.향신성 약품 및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복용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집단행위	55.학교의 동의 없이 서클을 조직한 운영한 학생 및 가담한 학생	○	○	○			
	56.불순한 의도로 학생을 선동하거나 이에 가담한 학생	○	○	○			
	57.불법 집회나 불량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	○	○	○			
	58.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	○	○	○			
사이버관련	59.사이버머니 및 게임 아이템을 빼앗은 경우(절도)	○	○	○			
	60.사이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의나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(악플,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 또는 촬영된 사진을 친구들끼리 돌려보거나 SNS상에 올리는 행위)	○	○	○	○	○	
	61.사이버 상이나 매체를 이용해 공공연히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	○	○	○	○	○	
	62.학교 네트워크 통신망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	○	○	○			
	63.컴퓨터 바이러스를 고의로 유포한 학생	○	○	○			
	64.학내망의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65.불법 복제물을 판매하여 이득을 얻은 학생	○	○	○			
	66.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67.음란 화상 채팅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	○	○	○	○		
	68.불법 게임 머니를 사고판 학생	○	○	○			
	69.학교에 대해 고의적인 비방 글을 올린 학생	○	○	○	○	○	
기타	70.1년 이내에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을 때에는 가중 처벌하며, 학교 급(중·고)과 상관 없이 교내봉사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를 4회 이상 받을 때는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.	○	○	○	○	○	

71.동일학년 내에서 선도확인서 누적 수가 4매 이상이 되면 위원회에 회부하여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.	○	○	○	○	○	
72.징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줄 수 있다.	○	○	○	○	○	
73. 동일 학년 내에서 선도확인서 누적 수가 6매 이상이 되면 위원회에 회부하여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.		○	○	○		
74. 의사와 관계없이 호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그 학생을 따라다니는데, 그런 행동과 관련하여 그 사람에게 정신적·신체적 피해를 주는 학생(스토킹)		○	○	○	○	
75. 사안 발생시 사안 대상학생이 거짓 진술을 할 경우(최초 진술서)						가중처벌
76. 사안 발생시 사안 대상학생이 사안을 제보하거나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(최초 진술서)						징계경감
77. 사안 발생과 관련하여 제보자나 사실대로 진술한 학생에게 보복을 한 행위가 있을 때				○	○	가중처벌

[별표 2] 복장기준(세부징계기준 42번 관련) < 개정 2017.9.13., 2021.12.15.>

구 분	내 용			
복 장	· 본교 학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교복을 착용한다.			
	구분		착용복장	
	춘추복	3월-4월	여학생 긴팔 셔츠	남학생 긴팔 셔츠
		9월-10월	정장바지 또는 춘추복 체크 스커트	정장바지
	동복	11월-1월	넥타이, 후드 집업 맨투맨	
	하복	5월-9월	반팔 생활복 또는 긴팔 셔츠	반팔 생활복 또는 반팔 셔츠
			반바지 또는 여름 스커트 또는 정장바지	반바지 또는 정장바지
			넥타이, 후드 집업 맨투맨	
	- 세부 사항은 학생회와 협의하여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결정한다.			

[별표 3] 휴대폰 및 음향기기 관련 기준(세부징계기준 9번 관련) <개정 2024.04.12.>

휴대폰 및 음향기기	· 수업 시간 중 교육적 목적 이외의 사용은 절대 금지한다.(적발 시 회수) - 회수 후 일주일간 학교에서 보관한다.
------------	--

[규정에 관한 추가 설명]

1. 교복 관련 선도확인서 발급 안내 : 지정된 학교 교복을 착용하지 않고 등하교하는 경우 ‘학생 선도 규정’에 의거하여 선도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음.

2. 학생선도 절차

규정위반발생	모든 규정 위반 행위	규정 위반 상황 발생, 담임교사 및 관련교사 상담 -현장 선도 교사의 훈계 및 지도 -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도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(선도 확인서가 발급되면 각종 시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--------	-------------	---



조사 (생활지도부)	중대 선도규정 위반 사안	학생생활지원부에서 정식으로 조사, 학생 진술서 작성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

1차 심의	선도위원회 회부 여부	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칙 위반의 경위,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

선도위원회 소집	선도 위원회	선도위원회가 불가피한 중대 사안인 경우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수 위 심의, 심의 후 양정이 결정되면 학생 지도 방법 결정
-------------	-----------	--



결과 통지	선도 위원회	선도위원회 결과 통지 및 징계사항 공고
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2025. 3. 20.

상해한국학교장(직인생략)